

우선심사제도란 무엇인가?

1. 의의 : 특허·구법적용된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심사청구된 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으로서 다음 대상 및 요건에 해당되면 심사청구일자(특·실의 경우)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함.

2. 우선심사 대상

- ㉠ 타인이 무단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
- ㉡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국익 및 공익보호차원)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 출원,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3. 우선심사의 신청요건

- 심사청구된 출원(특·실의 경우에 한함)
- 대상 ㉠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
대상 ㉡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또는 조기공개 신청시에만 가능
-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 납부자번호 부여받아 수수료 납부

4. 우선심사의 결정

해당 심사관은 접수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

5. 문의처 : 특허청 심사조정과 (042-481-5406)